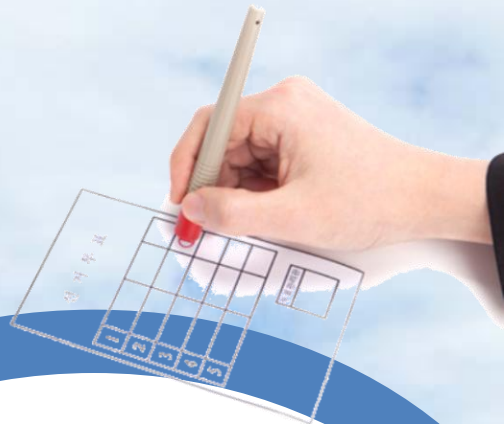


공정 하고 차별 없는 세상



‘점자형 선거공보’로 시각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합니다



[공직선거법 제65조]는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의 **점자형 선거공보** 제작을 의무화하고 점자 미해독 시각장애 선거인을 위한 디지털 저장 매체(USB: 음성, 점자 전환 디지털 저장장치)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
우리 점자도서관은 시각장애인 유권자가 **점자형 선거공보**를 통해 모든 후보자의 기호와 이름, 공약사항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.

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드립니다.



※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당·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

: 선거공보의 작성·제출 등

- 점자형 선거공보와 디지털 저장매체는 선거공영제(법 제122조의 2 제3항 제2호)에 따라 국가가 지원함.

사단법인경북시각장애인연합회

경북점자도서관